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행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1. 의결주문

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행정사 정보시스템과 실무교육 권한을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및 교육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또한, 행정사 업무신고 시 지자체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사 정보시스템 및 실무교육 권한의 행정사회 위탁(안 제18조의2, 제25조, 제26조)

효율적인 행정사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사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규정을 마련하고, 시스템의 운영·관리 및 실무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
나. 행정사 업무신고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(안 제20조제2항)

민원인이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경우, 업무 담당자가 정보시

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대한행정사회 기 협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행정사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관리 등 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업무신고 처리 담당자가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“(권한의 위임)”을“(업무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34조제1항”을 “법 제34조제2항”으로, “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”를 “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18조의2의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(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호 또는 제2호 사무와 관련 제1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,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20조(행정사의 업무신고) ① (생략)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1. ~ 3. (생략) 제25조(<u>권한의 위임</u>) 행정안전부	제18조의2(행정사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관리 등 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제20조(행정사의 업무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업무신고 처리 담당자가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25조(<u>업무의 위탁</u>) ① -----

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
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·도
지사에게 위임한다.

<신 설>

제2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행
정안전부장관 및 「한국산업인
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
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
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
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
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
주민등록번호, 같은 조 제2호에
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
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
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2. (생 략)

3. 삭 제

<신 설>

----- 법 제34조제2항-----
----- 업무를 행정사
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
제2항에 따라 행정사 제도의 원
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1
8조의2의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을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행
정안전부장관(제25조에 따라 행
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
은 자를 포함한다) 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4. 제1호 또는 제2호 사무와 관
련 제18조의2에 따른 정보시
스템의 구축·운영 사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246